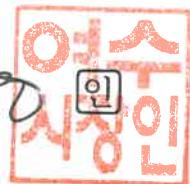


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 월 29 일

여 수 시 장

2023.12.29



여수시 조례 제2020호

붙임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 1부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 예보·경보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조치, 상황관리, 기관 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 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란 법 제3조제3호의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긴급구조기관"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중 여수시 소재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제2장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담당관 및 지원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담당관 및 지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장 :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차장 : 부시장
 3. 총괄조정관 : 행정안전국장
 4. 대변인 : 홍보담당관
 5. 통제관 :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소·단장. 다만, 해당 국·소·단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시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6. 담당관 :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7. 지원담당관 : 안전총괄과장
- ③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여수시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여수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지역재난관

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대변인 : 재난 수습 홍보업무 총괄
 5. 통제관 :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 통제관 보좌, 재난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지원담당관 : 총괄조정관 보좌, 대책본부 행정지원
 8. 실무반 : 별표 3에 따른 재난의 수습
- ② 제1항제8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6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자연재난에 한정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등)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연재난 : 별표 4

2. 사회재난 : 별표 7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8조에 따른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소·단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중 본부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

3. 각 실무반장

4. 해당 재난 관련 관계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

5.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

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 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 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 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 및 이용)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 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제3장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여수시 재 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 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 관련 국·소·단장

2. 그 밖에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국·소·단장(해당 국·소·단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을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관할구역 내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사람

나.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 한다.

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6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7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및 수습 상황
 5. 그 밖에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 ① 시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 ② 시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지원 요청)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재난현장 조치)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시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 경보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제22조(재난 예보·경보의 통보 등) ① 시장이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이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3조(재난수습 홍보)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 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시·도대책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② 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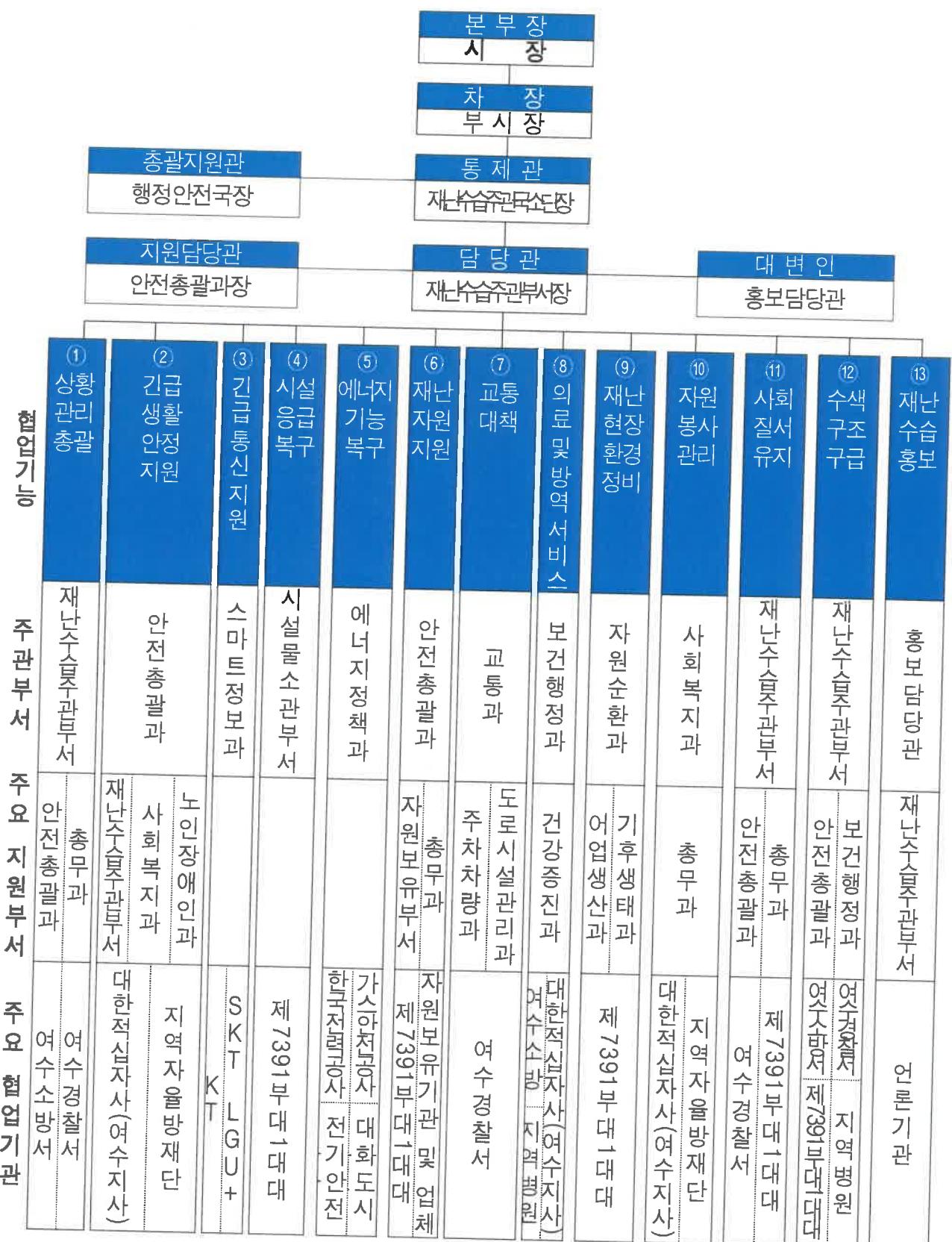
제24조(수당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한 수당과 휴무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五三 1]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제4조 관련)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5조 제2항 관련)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 및 사고의 유형	비 고
안전총괄과	풍수해, 지진, 대형화산폭발, 가뭄, 낙뢰, 한파, 폭염,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10
어업생산과	적조, 대규모 해양오염	2
해양정책과	조수	1
산림과	산사태, 산불	2
산단환경관리과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여수산단 가스사고	2
기후생태과	대규모 수질오염, 초미세먼지	2
도로시설관리과	공동구 재난, 도로터널, 지하차(보)도	3
도로과	고속철도 대형사고, 항공기 사고	2
섬발전지원과	해양선박사고(여객선)	1
수산경영과	해양선박사고(연근해어선)	1
허가과	다중밀집건물붕괴 대형사고	1
농업정책과	가축질병	1
보건행정과	감염병, 보건의료	2
스마트정보과	정보통신 사고	1
에너지정책과	전력사고, 천연가스 수급 분야	2
상수도과	식용수	1
교통과	육상화물운송, 해상케이블카	2
회계과	정부중요시설(청사소방분야)	1
건설과	저수지붕괴	1
문화유산과	문화재 시설 사고	1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

자연재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제5조제1항제8호 관련)

구성	주요 임무	
지휘부		
본부장(시장)	○ 여수시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의 업무 총괄	
차장(부시장)	○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대변인 (홍보담당관)	○ 재난수습통보 총괄(본부장이 지정한 자)	
통제관 (행정안전국장)	○ 재난관리 총괄 담당 국장급이 되며, 본부장 및 차장 보좌, 준비 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비상단계에서 실무반 업무 총괄	
담당관 (안전총괄과장)	○ 해당 재난 유형의 담당 과장급이 되며, 실무반 업무 총괄·운영	
실무반		
① 재난 상황 관리	재난정보 수집· 전파 (재난안전 상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 정보 등 상황 전파 ○ 관계기관 간 재난 상황 공유 및 접수·처리 ○ 재난상황 관리 및 NDMS 입력 지원 등 ○ CBS(재난문자) 송출 및 승인 ○ 시장·부시장 주재 회의 준비 ○ 영상회의 준비·운영 ○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운영
	재난상황 보고서 작성 (실무반 근무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보고서 접수 및 처리 ○ 일일 상황일지 작성 ○ 주요 인사 재난안전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 TV 방송 모니터링 ○ 민심 동향, 미담 사례 등 확인
	상황 관리 총괄 (안전 총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재난현장 수습 상황관리 총괄 ○ 대통령·국무총리·중앙(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특별 지시사항 처리 ○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구성	주요 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발생 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및 보고 ○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및 상황근무자 근무 명령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관리 ○ 도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 수습지원단 지원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 재난상황별 공동 대응체계 구축 ○ 관계기관 비상근무자 파견 요청
② 긴급생활 안정지원 (안전총괄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민 구호 상황 파악 및 지원 ○ 재해구호물자 비축리 및 신속한 지원 등 관리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협조 요청 ○ 임시주거시설 지정 등
③ 긴급 통신 지원 (스마트정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 및 도 긴급통신지원단 지원 요청 ○ 재난현장 긴급통신망 구축·운영 ○ 지원 기관별 임무·역할에 따른 유무선 비상 연락처 전파 등 ○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④ 시설 응급 복구 (시설물 소관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 관과소 및 읍면동 복구현황 파악
⑤ 에너지 기능 복구 (에너지 정책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 긴급 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⑥ 재난자원 지원 (안전총괄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피해지역 부족 자재·장비·인력 지원체계 가동 ○ 자원 응원요청 및 조정 ○ 자원 응원관리 ○ 자원실적 정리, 보고서 작성
⑦ 교통대책 (교통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통제 및 도로 긴급 복구 실시 ○ 대체교통수단 확보 ○ 특별 교통 대책 수립·시행, 수송 수단·장비·인력 지원 ○ 교통정보(상황) 수집 및 제공, 노선 및 운행 조정 ○ 교통 두절 지역 파악 및 우회도로 개설 지원

구성	주요 임무
⑧ 의료 및 방역 서비스 (보건행정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현장 응급의료 지원팀 지원 요청 ○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체계 운영 ○ 침수 지역 및 임시주거시설 주변 방역 활동 실시 ○ 사상자 및 부상자 현황 파악·관리 ○ 입·퇴원 환자 병원 파악·관리
⑨ 재난 현장 환경 정비 (자원순환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폐기물 발생량 등 파악 및 지원체계 구축 ○ 재난 현장 폐기물을 수거·처리계획 시행 ○ 임시적환장 설치 및 운영 관리
⑩ 자원봉사 관리 (사회복지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 시설 응급 복구 등 대민 지원활동 추진 ○ 자원봉사 활동 상황 취합 및 보고 ○ 자원봉사 인력 필요 물품 및 기자재 지원 ○ 자원봉사자 활동 지역 배분
⑪ 사회질서 유지 (여수 경찰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 우려 지역 순찰 강화 및 출입 통제 ○ 피해 지역 주민대피 지원 ○ 피해 지역 범죄 예방 및 치안유지 ○ 재해 발생 우려 지역 등 사전 교통통제 예상 지역 조사
⑫ 수색·구조·구급 (여수 소방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피해 발생 대비 응급의료기관의 준비 상황 및 비상 연락망 점검 ○ 재난지역 수색, 구조 및 구급 업무 ○ 재난현장 특성 및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단수 지역 생활용수 급수 업무
⑬ 재난수습 홍보 (홍보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 대응 활동 ○ 재난 대응 활동 등에 대한 언론보도 자료 제공 ○ 재난 현장 브리핑 및 기자단 대응 ○ 재난 상황별 국민 행동요령 홍보 ○ SNS 등 유통되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대응

사회재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제5조제1항제8호 관련)

구 성		주 요 임 무
지휘부	본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책본부 업무 총괄
	차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대변인 (홍보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수습홍보 총괄(본부장이 지정한 자)
	통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장 및 차장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비상단계에서 실무반 업무 총괄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재난유형의 담당 과장급이 되며, 실무반 업무 총괄·운영
실무반	① 재난상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 대통령·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지역사고수습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관리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 시·도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 재난상황별 공동 대응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민 구호 상황파악 및 지원 ○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협조 요청 ○ 임시주거시설 지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 및 도 긴급통신지원단 지원 요청 ○ 재난현장 긴급통신망 구축·운영 ○ 재난현장 긴급통신 송·수신 체계유지(재난안전통신망 포함) ○ 지원 기관별 임무·역할에 따른 유무선 비상연락처 전파 등

구 성		주 요 임 무
실무반	④ 시설 응급 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도로, 마을기반조성, 광역상수도, 항공, 도시개발 ○ 주택 또는 주거를 겸한 상가 ○ 방조제, 저수지, 배수장 등 수리시설 ○ 농경지, 농림시설, 축사, 비닐하우스 ○ 어항시설, 어선, 어업 무선국시설, 등대시설, 항만시설 ○ 영전,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양식시설, 수산물입식 국·공립, 사립 학교시설 ○ 산사태, 산지계류, 사방댐, 임도, 휴양림, 수목원 ○ 자목 및 표고버섯 재배사, 산림작물 ○ 정보통신 시설 등 응급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긴급지원 등 재난대응 상황실 운영 ○ 임시 재난대책본부 에너지 공급지원 ○ 이재민 임시수용시설 긴급에너지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피해지역 부족 자재·장비·인력 지원체계 가동 ○ 자원 응원요청 및 조정 ○ 자원 응원관리 ○ 자원실적 정리, 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통제 및 도로 긴급복구 실시 ○ 대체교통수단 확보 ○ 특별교통대책 수립·시행, 수송수단·장비·인력 지원 ○ 교통정보(상황) 수집 및 제공, 노선 및 운행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현장 응급의료 지원팀 지원 요청 ○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체계 가동 준비 ○ 임시주거시설 주변 방역활동 실시 ○ 사상자 및 부상자 현황 파악·관리 ○ 입·퇴원 환자 병원 파악·관리
	⑧ 의료 및 방역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현장 폐기물 수거·처리계획 시행 ○ 재난폐기물 발생량 등 파악 및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활동 상황 취합 및 보고 ○ 자원봉사 인력 필요 물품 및 기자재 확보 ○ 자원봉사자 개인 및 단체 언론활동 관리 ○ 자원봉사자 활동 모니터링 실시 ○ 자원봉사자 활동지역 배분
	⑩ 자원봉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활동 상황 취합 및 보고 ○ 자원봉사 인력 필요 물품 및 기자재 확보 ○ 자원봉사자 개인 및 단체 언론활동 관리 ○ 자원봉사자 활동 모니터링 실시 ○ 자원봉사자 활동지역 배분

구 성		주 요 임 무
실무반	(11) 사회질서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우려지역 순찰강화 및 출입통제 ○ 피해지역 주민대피 지원 ○ 피해지역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 재해발생 우려지역 등 사전 교통통제 예상지역 조사 ○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 재난지역 긴급차량 이동 최우선 지원
	(12) 수색·구조· 구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피해 발생대비 응급의료기관의 준비상황 및 비상연락망 점검 ○ 고립지역, 침수지역, 산사태, 화학·방사능 등으로 접근 곤란예상 지역 현황 파악 및 인명구조·대피 계획수립
	(13) 재난수습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활동 ○ 재난 관련 책임기관의 재난대응 활동 등에 대한 언론보도 자료 제공 ○ 재난현장 브리핑 및 기자단 대응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별표 4]

자연재난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비상단계		비상1단계	비상2단계	비상3단계
본부장		시장		
차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실(국)장)		
통제관		행정안전국장		
담당관		안전총괄과장		
1) 상황관리반	인원	6+ α 명	13+ α + β 명	15+ α + β 명
	반장	자연재난팀장 1명	안전총괄과장 1명	안전총괄과장 1명
2) 협업기능반(α)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안전 상황실 등)	(2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협업부서 직원 2명	(6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2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협업부서 직원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2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재난수습 협업부서 직원 1명	(3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재난수습 협업부서 직원 2명	(3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재난수습 협업부서 직원 2명
3) 긴급생활 안정지원반(β)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2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2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2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라) 행정지원팀	(1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1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1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2) 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안전총괄과 등)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자원순환과 등) 다) 긴급 통신지원반(스마트정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시설물 소관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에너지정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홍보담당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총괄과 등) 아) 교통대책반(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행정과) 차) 지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사회복지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안전총괄과, 여수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안전총괄과, 여수소방서, 여수해양경찰서)
3)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	· 육군제7391부대1대대, 여수소방서, 여수경찰서, 여수교육지원청,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여수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안전보건공단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시·도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6.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별표 5]

자연재난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4 비교 제6호 관련)

구분		비상단계 기준
1. 풍수해 (태풍· 호우· 대설)	가. 비상1단계	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된 경우
		1)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3) 호우·대설·태풍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나. 비상2단계	1)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나 대설경보가 발표되고 3일 이상 호우 또는 대설 전망이 있는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호우·대설·태풍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된 경우
		1)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자연지진의 관측 결과(이하 "지진 관측 결과"라 한다), 규모 4.0 ~ 4.9의 지진(해역은 4.5 이상)이 발생한 경우 2)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V 이상이 발생한 경우 3)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진해일주의보(이하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다. 비상3단계	1) 규모 5.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VI 이상이 발생한 경우 3)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4)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5)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1)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자연지진의 관측 결과(이하 "지진 관측 결과"라 한다), 규모 4.0 ~ 4.9의 지진(해역은 4.5 이상)이 발생한 경우 2)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V 이상이 발생한 경우 3)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진해일주의보(이하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1) 규모 5.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VI 이상이 발생한 경우 3)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4)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5)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1) 규모 5.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VI 이상이 발생한 경우 3)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4)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5)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1) 규모 5.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VI 이상이 발생한 경우 3)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4)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5)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구분		비상단계 기준
2. 지진 · 지진해일 및 화산	다. 비상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규모 5.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VI 이상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3)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4)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3. 가뭄	가. 비상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수가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65% 이하일 경우 2)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 영농기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70% 이하일 경우 - 밭: 영농기 토양 유효수분율 60% 이하일 경우
	나. 비상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수가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55% 이하일 경우 2)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 영농기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 이하, 비영농기 저수지 저수율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 밭: 영농기 토양 유효수분율 45% 이하 3) 하천유지용수가 부족하거나 공급 제한할 경우 4) 영농기 등 계절적 물 수요가 많은 시기에 용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다. 비상3단계	가뭄의 심각단계가 지속되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폭염	가. 비상1단계	기상특보중 폭염 주의보가 발표되고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체감온도가 33도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수 있고 비상 1단계 실시
	나. 비상2단계	기상특보중 폭염 경보가 발표되고(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체감온도가 35도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수 있고 비상 2단계 실시

구분		비상단계 기준
4. 폭염	다. 비상3단계	폭염경보가 발효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5. 한파	가. 비상1단계	기상특보 중 한파주의보 가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비상2단계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 가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비상3단계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 가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규모 피해 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비고

-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도서지역(서해5도, 흑산도·홍도, 거문도·초도, 추자도를 말한다), 산지(제주도산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경북북동산지를 말한다) 및 면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

[별표 6]

자연재난 상황 단계별 비상근무 편성 기준

근무 체제		기상(피해)상황	근무 인원	근무위치 및 근무방법
대비·대응	상시	◦ 평 시	주간 2명 야간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 :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 2명 ◦ 야간 : 재난안전상황실 전담근무자 3명 (당직사령 포함)
	초기 대응	◦ 기상 정보 발표 시	주간 3명 야간 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 : 안전총괄과 3명 ◦ 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총괄과 3명(예비특보 발효 시) - 재난안전상황실 전담근무자 등 3명
지대본 비상 단계	비상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 예비특보 ◦ 호우·대설 주의보 ◦ 폭염주의보 발효 가 2일 이상 지속 ※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탄력적 운영 (가상 등 제반 상황 검토 후) 	<p style="text-align: center;"><소속 부서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p> <p>부시장 등 6여 명+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시 (해제 시까지 재난안전상황실 교대 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개 기능 협업부서 각 1명 ※ 사회질서유지반, 수색구조구급반 등 협업기관은 필요시 근무 ◦ 13개 기능 협업부서 : 2명 ◦ 협업부서 외 부서, 읍·면·동 : 1명 근무 ※ 소속부서에서 해제 시까지 근무
	비상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 주의보 ◦ 호우·대설 경보 ◦ 폭염 경보가 2일 이상 지속 ◦ 국지적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재난안전대책본부></p> <p>부시장 등 13여 명+$\alpha+\bet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해제 시까지 재난안전상황실 교대 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개 기능 협업부서 각 1명 ※ 사회질서유지반, 수색구조구급반 등 협업기관은 필요시 근무 ◦ 13개 기능 협업부서 : 1/3명 ◦ 협업부서 외 부서, 읍·면·동 : 1/5명 근무 ※ 소속부서에서 해제 시까지 근무
	비상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 경보 ◦ 대규모 피해가 예상 되거나 발생한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재난안전대책본부></p> <p>시 장 등 15여 명+$\alpha+\bet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해제 시까지 재난안전상황실 교대 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개 기능 협업부서 각 1명 ※ 사회질서유지반, 수색구조구급반 등 협업기관은 필요시 근무 ◦ 13개 기능 협업부서 : 1/2명 ◦ 협업부서 외 부서, 읍·면·동 : 1/4명 근무 ※ 소속부서에서 해제 시까지 근무

[별표 7]

사회재난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본부장	시장	
차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행정안전국장	
통제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단장	
담당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무반	인원	총 $10+\alpha+\beta+\gamma$ 명
	반장	과장급 1명
	1) 재난상황 총괄반 (9명)	가) 상황관리 총괄팀(3명) 나) 수습상황 파악팀(6명)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2) 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다) 긴급 통신지원반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안전총괄과 · 자원순환과 · 스마트정보과 · 시설물 소관부서 · 에너지정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아) 교통대책반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차) 지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카) 사회질서 유지반 타) 수색, 구조, 구급반 · 홍보담당관 · 안전총괄과 · 교통과, 주차차량과 · 보건행정과 · 사회복지과 · 재난수습 주관부서 · 재난수습 주관부서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	· 육군제7391부대1대대, 여수소방서, 여수경찰서, 여수교육지원청,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여수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안전보건공단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관리 국·소·단 소속 직원

비고

-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재난상황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근무방법: 24시간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8]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 처리사항

일련 번호	사무 내용	업무 내용	담당 관	통제 관	차장	본부 장
1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input type="radio"/>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input type="radio"/>			
		현장관리관 파견			<input type="radio"/>	
		사고수습지원 파견		<input type="radio"/>		
		유관기관 파견요구		<input type="radio"/>		
2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input type="radio"/>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input type="radio"/>		
		상황판단회의		<input type="radio"/>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input type="radio"/>		
		재난 예보·경보발령		<input type="radio"/>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input type="radio"/>			
3	재난대책본부회의	회의소집			<input type="radio"/>	
		회의결과통보		<input type="radio"/>		
4	재난대책본부 운영상황	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input type="radio"/>		
		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input type="radio"/>
5	피해조사 및 복구	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input type="radio"/>		
		피해조사결과 보고			<input type="radio"/>	
		재난복구계획 수립				<input type="radio"/>
6	특별재난지역 건의 등	특별재난사태 선포 건의				<input type="radio"/>
		특별교부세 교부 요청			<input type="radio"/>	